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. 4. 12 선고 2022가단2176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 
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노식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3. 22.

판 결 선 고 2023. 4. 12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“이 사건 각 부동산”이라 한다) 중 각 2분의 1 지분에  
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1. 10. 13. 접수 제1352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 
“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”라고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. 8. 2.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원고는 2021. 10. 13.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소유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2021. 10. 12.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갑 2호증의 1, 2의 각 기재

### 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#### 가. 주장

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.

#### 나. 판단

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,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불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(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2다46256 판결).

이 사건의 경우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불만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원묵

별지